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57
----------	------

2013년 7월 5일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교육감
- 나. 회부일자 : 2013년 6월 18일
-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13년 7월 5일 상정, 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이승복)

가. 제안이유

- 교육전문직원 지방직화(2013. 6.12)에 따른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
직원의 정원책정
- 본청 조직개편을 위한 정원책정 및 조정

- 정보화담당관 및 유아교육과장 직위 정원 책정
- 일반직 증원 및 기능직 감축, 교육전문직원 증원

나.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안 제2조)

- “6,840명”을 “7,299명”으로 증원함

나. 교육전문직원 정원 신설(안 제2조제3호)

- 본청·지역교육청·직속기관 등에 두는 교육전문직원 정원 459명

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개정(안 제3조 관련 별표2)

- 교육전문직원 신설

구분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
비율	30% 이내	70% 이상

라.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개정(안 제4조 관련 별표3)

- 일반직 계 “3,697명”을 “3,714명”으로 증원
- 기능직 계 “3,116명”을 “3,099명”으로 감축
- 교육전문직원 계 “459명”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연주)

○ 지방공무원의 정원 책정에 관한 근거조문의 변경(안 제1조)

- 동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의 삭제, 제15조 및 제20조의 개

정, 제15조의2 신설 등 근거조문의 변경에 따라 이를 동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책정과 지방공무원 총수 증원(안 제2조)

- 안 제2조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두는 교육전문직원 총 459명의 정원을 책정하여 지방공무원 총수를 7,299명으로 하고자 함.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시·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과 국가직 공무원(교육전문직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교육감 소속 인력관리 체계를 일원화하여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국가직 교육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을 지방직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하고자 「교육공무원법」을 개정(법률 제11527호, 2012. 12. 11. 일부개정, 2013. 6. 12. 시행)하여 시·도교육감에게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하였음(동법 제58조~제61조 참조).
- 이와 더불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시·도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음(대통령령 제24530호, 2013.5.8. 일부개정, 2013.6.12. 시행).

- 안 제2조의 경우 이러한 「교육공무원법」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을 459명(국가직 교육공무원 447명의 지방직 전환과 유아교육과의 신설에 따른 교육전문직원 12명 증원)으로 하여 지방공무원의 총수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할 것임.

○ **교육전문직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마련(안 제3조 관련 별표 2)**

- 안 제3조 관련 별표 2에서는 신설된 교육전문직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학관·교육연구관을 30% 이내로, 장학사·교육연구사를 70%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장학관·교육연구관이 96명(21.48%), 장학사·교육연구사가 351명(78.52%)인데, 동 조례안이 장학관·교육연구관 비율을 30% 이내로 하고 장학사·교육연구사 비율을 70% 이상으로 정한 것은 시·도간 협의에 따른 전국 시·도교육청과의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이번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으로 장학관·교육연구관을 추가로 책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음. 다만 기관의 규모, 교육행정수요의 변화,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 조직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학관·교육연구관 비율을 적정하게 책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정보화담당관·유아교육과 신설 및 정원 책정(안 제4조 관련 별표 3)**

- 안 제4조 관련 별표3의 경우 정보화담당관과 유아교육과 신설에 따른 정원의 책정 및 일반직과 기능직 정원을 상계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정보화담당관과 유아교육과 등을 신설하여 정보화담당관에 1명의 4급 일반직을 책정하고 유아교육과 등에는 장학관 1명을 유아교육과장으로 보하여 부서신설에 따른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임. 또한 결원 상태인 기능직 17명 감축하여 정보화담당관을 포함한 일반직 17명을 증원, 지방공무원 충수를 유지하고자 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조 본문 중 “6,840명”을 “7,29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정원”을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본청·지역교육청·직속기관 등에 두는 교육전문직원 정원 459명

별표2~3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비 율	2.5%이내	11%이내	39%이내	38%이내	9.5%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비 율	8% 이내	20% 이내	36% 이내	36% 이상

3. 교육전문직원

구 분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
비 율	30% 이내	70% 이상

[별표 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지역 교육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 계	7,299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714				
23급	1		1		
3급	9		9		
34급	3		3		
4급	37	1	25	11	
45급	7		7		
5급 이하 소계	3,657				
별정직 계	14				
5급상당 이하 소계	14				
연구직 계	12				
기록연구사	12				
기능직 계	3,099				
교육전문직원 계	459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0		28	22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409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제15조 및 제20조.....</p>
<p>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840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정원 10명 2. 본청·지역교육청·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6,830명 3. (신설) 	<p>제2조(정원의 총수)..... 7,299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3. 본청·지역교육청·직속기관 등에 두는 교육전문직원 정원 459명

현행		개정안																																																																																																																																																																																																																			
<p>[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 관련)</p> <p>1. 생략 2. 생략 3. (신설)</p>		<p>[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 관련)</p> <p>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교육전문직원</p>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장학관·교육연구원</td> <td>장학사·교육연구사</td> </tr> <tr> <td>비율</td> <td>30% 이내</td> <td>70% 이상</td> </tr> </table>		구분	장학관·교육연구원	장학사·교육연구사	비율	30% 이내	70% 이상																																																																																																																																																																																																												
구분	장학관·교육연구원	장학사·교육연구사																																																																																																																																																																																																																			
비율	30% 이내	70% 이상																																																																																																																																																																																																																			
<p>[별표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p>[별표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계</th> <th>시의회 사무처</th> <th>본청</th> <th>지역 교육청</th> <th>공립의 각급 학교</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6,840</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 계</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교육감</td> <td>1</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3,697</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2·3급</td> <td>1</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 3급</td> <td>9</td> <td></td> <td>9</td> <td></td> <td></td> </tr> <tr> <td> 3·4급</td> <td>3</td> <td></td> <td>3</td> <td></td> <td></td> </tr> <tr> <td> 4급</td> <td>36</td> <td>1</td> <td>24</td> <td>11</td> <td></td> </tr> <tr> <td> 4·5급</td> <td>7</td> <td></td> <td>7</td> <td></td> <td></td> </tr> <tr> <td>5급 이하 소계</td> <td>3,64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별정직 계</td> <td>14</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5급상당 이하 소계</td> <td>14</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직 계</td> <td>12</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연구사</td> <td>12</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기능직 계</td> <td>3,116</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지역 교육청	공립의 각급 학교	총계	6,840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697					2·3급	1		1			3급	9		9			3·4급	3		3			4급	36	1	24	11		4·5급	7		7			5급 이하 소계	3,641					별정직 계	14					5급상당 이하 소계	14					연구직 계	12					연구사	12					기능직 계	3,116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계</th> <th>시의회 사무처</th> <th>본청</th> <th>지역 교육청</th> <th>공립의 각급 학교</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7,299</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 계</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교육감</td> <td>1</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3,714</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2·3급</td> <td>1</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 3급</td> <td>9</td> <td></td> <td>9</td> <td></td> <td></td> </tr> <tr> <td> 3·4급</td> <td>3</td> <td></td> <td>3</td> <td></td> <td></td> </tr> <tr> <td> 4급</td> <td>37</td> <td>1</td> <td>25</td> <td>11</td> <td></td> </tr> <tr> <td> 4·5급</td> <td>7</td> <td></td> <td>7</td> <td></td> <td></td> </tr> <tr> <td>5급 이하 소계</td> <td>3,657</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별정직 계</td> <td>14</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5급상당 이하 소계</td> <td>14</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직 계</td> <td>12</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기록연구사</td> <td>12</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기능직 계</td> <td>3,099</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교육전문직원 계</td> <td>459</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원</td> <td>50</td> <td></td> <td>28</td> <td>22</td> <td></td> </tr> <tr> <td>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원 및 장학사·교육연구사</td> <td>409</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지역 교육청	공립의 각급 학교	총계	7,299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714					2·3급	1		1			3급	9		9			3·4급	3		3			4급	37	1	25	11		4·5급	7		7			5급 이하 소계	3,657					별정직 계	14					5급상당 이하 소계	14					연구직 계	12					기록연구사	12					기능직 계	3,099					교육전문직원 계	459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원	50		28	22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원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409				
구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지역 교육청	공립의 각급 학교																																																																																																																																																																																																																
총계	6,840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697																																																																																																																																																																																																																				
2·3급	1		1																																																																																																																																																																																																																		
3급	9		9																																																																																																																																																																																																																		
3·4급	3		3																																																																																																																																																																																																																		
4급	36	1	24	11																																																																																																																																																																																																																	
4·5급	7		7																																																																																																																																																																																																																		
5급 이하 소계	3,641																																																																																																																																																																																																																				
별정직 계	14																																																																																																																																																																																																																				
5급상당 이하 소계	14																																																																																																																																																																																																																				
연구직 계	12																																																																																																																																																																																																																				
연구사	12																																																																																																																																																																																																																				
기능직 계	3,116																																																																																																																																																																																																																				
구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지역 교육청	공립의 각급 학교																																																																																																																																																																																																																
총계	7,299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714																																																																																																																																																																																																																				
2·3급	1		1																																																																																																																																																																																																																		
3급	9		9																																																																																																																																																																																																																		
3·4급	3		3																																																																																																																																																																																																																		
4급	37	1	25	11																																																																																																																																																																																																																	
4·5급	7		7																																																																																																																																																																																																																		
5급 이하 소계	3,657																																																																																																																																																																																																																				
별정직 계	14																																																																																																																																																																																																																				
5급상당 이하 소계	14																																																																																																																																																																																																																				
연구직 계	12																																																																																																																																																																																																																				
기록연구사	12																																																																																																																																																																																																																				
기능직 계	3,099																																																																																																																																																																																																																				
교육전문직원 계	459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원	50		28	22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원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409																																																																																																																																																																																																																				